

서울특별시 마포구 출판문화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대표 발의: 차 해 영 의원)

의 안 번 호	26-94
------------	-------

발의년월일: 2026. 8. .

발 의 자: 차해영, 고안경, 김진천,
김해진, 남해석, 배동수,
원성혜, 장덕준, 장정희,
채종민, 최영섭, 한송이,
허디모데 의원(13인)

1. 제안이유

마포구 출판문화진흥센터 운영위원회에 센터 입주 계약기간이 만료된 사람을 위원으로 추가하여 실제 입주 경험을 바탕으로 한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, 센터의 운영 개선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운영위원회의 내실화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추가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붙임

나. 예산조치: 붙임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)

다. 소관부서: 문화예술과

라. 입법예고: 2026. 8. 24. ~ 8. 28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출판문화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출판문화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4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입주 계약기간이 만료된 사람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운영위원회 구성 등) ① ~ ③ (생 략)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1. · 2. (생 략) <u><신 설></u> <u>3.</u> (생 략) ⑤ (생 략)	제7조(운영위원회 구성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. 1. · 2. (현행과 같음) <u>3.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입주</u> <u>계약기간이 만료된 사람</u> <u>4.</u> (현행 제3호와 같음) ⑤ (현행과 같음)

【관 계 법 령】

문화예술진흥법

[시행 2025. 11. 11.] [법률 제21091호, 2025. 11. 11., 일부개정]

- 제5조(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)**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.
-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출판문화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비용추계 대상 아님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문화경제국 문화예술과 김해연
연 락 처	02-3153-8373